

Termination of Contract (2) ; 건설계약의 해지 (2)

A : You mentioned that **Termination of Contract** can be based on specific conditions of contract. In this regard, what conditions are the bases for it?

B : Though those particular conditions of contract vary with the nature of construction contracts, there are two conditions of any important contracts under which termination can be exercised. The one is termination by the Employer, and the other is termination by the Contractor.

A : Would you elaborate more about the termination by the Contractor?

B : For instance, according to FIDIC's standard forms of Works Contract, the Contractor is entitled to terminate the contract if the Employer fails to make due payment on time.

A : 건설계약의 해지가 특정 계약조건에 근거한다 하셨는데, 어떤 조건들이 근거가 되나요?

B : 계약해지의 근거조건들은 건설계약의 특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요 건설계약에 있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주자에 의한 계약해지이며, 다른 하나는 계약자(시공자)에 의한 계약해지입니다.

A : 계약자(시공자)에 의한 계약해지조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B : 예를 들어 FIDIC의 건설(시공)공사 표준계약에 따르면, 계약자(시공자)는 발주자가 적기에 해당 공사대금을 지불치 않을 경우 계약해지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1) "bases"는 "basis(근거)"의 복수형이고, "terminate the contract"은 "계약을 해지하다"로 이 경우 terminate이 동사로 쓰였음.
- (2) "Works Contract"은 "건설(시공)계약"을 뜻함. 반면, "용역계약"은 "Services Contract(Agreement)"라고 함.